



입학전형영향평가 규정

제정일	2015. 2. 1
개정일	2021. 4.15
개정차수	1차
담당부서	입학홍보과

제 1 장 총 칙

- 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(이하 “특별법” 이라 한다) 및 동법 시행령(이하 “시행령” 이라 한다)에 의거 동서울대학교(이하 “본교” 라 한다) 대학입학 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2조 (정의) 입학전형영향평가는 특별법 및 시행령에 의거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의 경우, 선행학습을 유발하였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자체평가 제도이며, 대학별 고사의 범위는 논술 및 필답고사, 면접 및 구술고사, 신체검사, 실기 및 실험고사,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등으로 하되, 실기고사(예체능)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- 제 3조 (평가기준) 영향평가의 평가영역, 평가내용 등의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 4조 (평가시기) 평가는 매년 입시 마감 직후부터 3월까지 실시한다.

제 2 장 평가위원회

- 제 5조 (입학전형영향평가 위원회) ① 대학별 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는지 여부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장은 입학홍보처장으로 하며, 위원은 전문지식을 갖춘 본교 교직원 및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위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 (개정 2021. 4.15)
-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-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재적인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- 제 6조 (간사) 위원회의 사무는 입학홍보처 입학홍보과에서 관장하며,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. (개정 2021. 4.15)
- 제 7조 (수당지급) 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 3 장 평가방법 및 절차

제 8조 (평가방법 및 절차) ① 입학홍보과에서는 영향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총장의 재가를 받은 후 평가 회의를 개최한다.

② 입학홍보과에서는 전년도 입시 결과를 기초로 평가 자료를 작성하여야하고, 평가위원회에서는 선행학습 유발 여부를 평가하여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.

제 9조 (평가결과 공개 및 활용) ①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은 매년 3월 31일까지 본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다.

② 영향평가 결과는 다음연도 입학전형 개선에 활용하여 업무에 반영 및 환류하여야 한다.

제10조 (기타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